

국세청,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

- 세계 NO.1 투자처로의 도약을 위해 ‘국내투자·청년고용 증대’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, 「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」 설치 등 세정지원방안 제시

□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'26.5.14.(목) 외국인투자음부즈만(KOTRA)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*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미국(AMCHAM)·유럽(ECCK)·독일(KGCC)·프랑스(FKCCI)·영국(BCCK)·일본(SJC)·중국(CCCK)·호주(AustCham)

○ 이번 합동 간담회는 “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”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정현장에서 구현하고

- 올해 초('26.1.28.) 이재명 대통령 주재 「모두의 성장,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」에서 논의됐던 ‘국내투자 확대,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’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.

○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·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,

-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(AMCHAM)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「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*」 설치를 알리고,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.

*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.6%(24.12월말 기준)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(서울·중부·인천)에 설치

□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임 청장은 “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”이라고 말하며, “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”고 답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①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: ①신고내용확인 면제, ②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

-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, 직전 1년간 ‘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(조특법§24)’시켰거나 ‘청년 등 상시근로자(조특법§29의7)를 10% 이상 증가’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
 - ① 향후 1년간 「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」 대상에서 제외*하고,
 - * 단,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- ②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.

| 신고내용확인 제외 및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(26.5.14.부터 1년간) |

외국인 투자기업	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
투자금액 증대	신고내용확인 실시일(심사신청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「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」 ¹⁾ 상 ‘공제대상 투자금액’이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한 법인
청년고용 확대	신고내용확인 실시일(심사신청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「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」 ²⁾ 상 ‘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한 법인

1)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, 2)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

②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: 지방청에 「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」 설치

-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
 - 수도권 지방청(서울·충부·인천)에 「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」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, 신고·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.
 -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·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|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(26.4월부터) |

지원대상	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의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법인 국내지사(지점·연락사무소) 등
설치장소	수도권 지방청(서울·충부·인천청)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
상담방법	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①전용 핫라인(126 연계 전화번호)과 ②상담용 웹메일*을 통한 비대면상담, ③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제공 * (서울청) tax365fs@nts.go.kr, (충부청) tax365fj@nts.go.kr, (인천청) tax365fi@nts.go.kr

*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, 간담회 개최일인 '26.5.14.부터 본격 운영

③ 맞춤형 신고지원 : ①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, ②공제·감면 컨설팅 제공

- ①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,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‘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’을 영어로 제작·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(’26.5월).
 -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1:1 맞춤형 개별상담*」도 제공할 것이다.
 - * ’26.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(nts.go.kr/gmt/main.do)에서 확인 가능
- ② 아울러 외국계기업(중소기업)에 대해서도 ‘법인세 공제·감면 가능여부와 금액’을 미리 확인해 주는 「법인세 공제·감면에 대한 컨설팅*」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.
 - *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·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·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

④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: APA 진행절차 간소화(Fast-track)

-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「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*(Advanced Pricing Agreement, APA)」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
 - * Advanced Pricing Agreement : 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
-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·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「Fast-track」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.
-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.

| APA Fast-track 처리절차 세부내용(’26.5.14. 이후 사전상담 신청건부터 적용) |
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요건) APA 갱신 신청 건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존 APA 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② 기존 APA와 거래구조·기능·위험이 동일하고 특관자 거래비중이 유사 ③ 신청 정상가격 범위가 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와 유사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전상담) 서면심사 후 3개월 내 APA Fast-track 적용여부 판단 ▪ (처리방법) 상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

□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“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”며 “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○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이임동 (044-204-2801)
		담당자	서기관 김현지 (044-204-2802) 사무관 구연수 (044-204-2822)
<협조>	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이 슬 (044-204-2961)
		담당자	사무관 안광원 (044-204-2962)
<협조>	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	책임자	과 장 김태형 (044-204-2831)
		담당자	사무관 최은지 (044-204-2832)
<협조>	국세청 공익법인·연구개발지원과	책임자	과 장 김광민 (044-204-3901)
		담당자	서기관 박운영 (044-204-3922)
<협조>	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	책임자	실 장 정영수 (02-3497-1822)
		담당자	과 장 박지호 (02-3497-1687)

□ 간담회 개요

- (일 시) '26. 5. 14.(목) 16:00 ~ 17:10
- (장 소)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
- (참 석) 국세청장, 국제조세관리관 등 본청 국장·과장
김두식 외국인투자음부즈만, 김태형 코트라 Invest KOREA 대표
외국상공회의소(미국·유럽·독일·프랑스·영국·일본·중국·호주) 회장단 8명

□ 주요 논의사항

- 외국계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
- 세무검증부담 완화·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 세정지원 안내

□ 간담회 현장사진



「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」 현판 제막식 사진

임광현 청장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단체사진

「국세청·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」 사진

<p>주한미국 상공회의소 (AMCHAM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▸ 회장 : 제임스 김(James Kim) ▸ 설립 및 회원사: 1953년, 800여 개 社 ▸ 업종별 28개 분과위원회 운영, 美정부 등에 국내시장 정보전달
<p>주한유럽 상공회의소 (ECCK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▸ 회장 : 필립 반 후프(Philippe van Hoof) ▸ 설립 및 회원사: 2012년, 380여 개 社 ▸ 산업별 17개 위원회 운영,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ECCK 백서 발간
<p>주한독일 상공회의소 (KGCCI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Korean-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▸ 회장 : 박현남 ▸ 설립 및 회원사: 1981년, 500여 개 社 ▸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, 직업교육, 에너지·환경 협력사업 추진 중
<p>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 (FKCCI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French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▸ 회장 : 다비드-피에르 잘리콩(David-Pierre JALICON) ▸ 설립 및 회원사: 1986년, 470여 개 社 ▸ 연간 약 60회의 네트워킹 행사 진행, 경제 전문지 정기 간행
<p>주한영국 상공회의소 (BCCK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The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▸ 회장 : 손 블레이클리(Sean Blakeley) ▸ 설립 및 회원사: 1977년, 200여 개 社 ▸ 정책협력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,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
<p>서울재팬클럽 (SJC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Seoul Japan Club ▸ 이사장 : 세키지마 료이치(関島 亮一) ▸ 설립 및 회원사: 1997년, 320여 개 社 ▸ 전문위원회(경영·세무 등 6개)와 분야별 위원회(상사·금융·전자 등 8개)
<p>주한중국 상공회의소 (CCCK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China Chamber of Commerce in the Republic of Korea ▸ 회장 : 가오첸(高晨) ▸ 설립 및 회원사: 2001년, 230여 개 社 ▸ 금융투자·무역·해운·철강 등 11개 지부 운영
<p>주한호주 상공회의소 (AustCham Korea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▸ 회장 : 러스 그레고리(Ross Gregory) ▸ 설립 및 회원사: 2008년, 110여 개 社 ▸ 회원사에 시장동향정보 제공, 비즈니스 어워즈 개최

참고 3

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 개요

- (개요) R&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
- (혜택) 심사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·과소신고가산세 면제
- 다만,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·누락 및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혜택 적용 배제
- (신청방법) 홈택스, 우편, 방문접수(세무서 민원봉사실, 지방청 법인세과)
* **홈택스 신청시 경로*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장현황 > 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·신고 >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

☛ 국내투자확대 & 일자리창출기업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」 서비스

- (우선처리 대상) 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①「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」상 '공제대상 투자금액'이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한 법인, ②「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」상 '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'가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한 법인
- (내용·절차) ①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최우선 심사, ②접수 14일 후 진행상황 유선 안내, ③결과서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심사결과 미리 통지
* '26.5.14. 이후 신청 건에 적용되며 1년 간 운영 예정

참고 4

「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」 제도 개요

- (개요) 조특법의 공제·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제·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
- (신청기간) 고용·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
- (혜택)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·과소신고가산세 면제
- 다만,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·누락 및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혜택 적용 배제
- (신청방법) 홈택스, 우편, 방문접수(세무서 민원봉사실, 지방청 법인세과)
* **홈택스 신청시 경로*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장현황 > 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·신고 >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신청

참고 5

「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」 세부 내용

- (개요) 외국인투자기업·외국법인 국내지사(지점·연락사무소) 등을 대상으로 외국계기업 과세체계, 신고·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 제공
 - (설치장소) 수도권 지방청(서울·중부·인천청)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
 - (상담방법)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①전용 핫라인(126 연계 전화번호)과 ②상담용 웹메일*을 통한 비대면상담, ③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가능
- * (서울청) tax365fs@nts.go.kr, (중부청) tax365fj@nts.go.kr, (인천청) tax365fi@nts.go.kr

「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」 운영 및 홍보 현황

1 지방청 내 상담창구 현판



2 국세청 누리집 배너



3 상담창구 비치 리플릿 *QR코드 → ‘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(2026)’ 책자로 연결

국내 세관원격마 방문
외국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적극 지원합니다.

- 기업 설립절차**
 - 투자형태, 법인 종류별 설립
 - 사업자등록 절차
- 국제조세**
 - 이전가격, 고정사업장
 - 국제거래 보고서
- 제도개선 건의**
 - 세무상 애로사항
 - 제도개선 건의

주요 세목 신고납부일정

- 법인세 (Corporate Income Tax)**
-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부가가치세 (Value Added Tax)**
-(1기) 7월 25일, (2기) 1월 25일
- 원천세 (Withholding Tax)**
-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

상담방법

- 방 문 서울·중부·인천청 법인세과 방문 예약
- 전 화 126-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
- 이메일 *세 tax365fs@nts.go.kr *중 tax365fj *인 tax365fi
-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
-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-17
-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

서울·중부·인천지방국세청
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
Tax Desk for Foreign Enterprises

“외국계기업의 세무상담, 더 쉽고 든든하게”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